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의결사항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주요내용

가. 법령 내 용어정비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시험과목 명칭 수정

- (기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포함) ⇒ (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2) 소방안전관리사 가산점 기준 명확화

- (기존) 소방안전관리사 ⇒ (개정) 소방안전관리사(1,2,3급), 가산점은 동일함

3) ‘주무부처’,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수정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서류전형 시 복무경력 기준 명시

-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으로 한정

나. 선발관련 조항 정비

1) 응시자격 조항 정비(예규 제4조)

- ‘전문경력관 가·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조문 삭제

→ 전역후 3년이 지난 사람 응시 제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와 상충

- 특수병과(법무, 군종, 치의 등) 출신 응시 자격 침해 해소를 위한 모든 병과 출신 장교로 응시자격 확대

· (기존)기본병과(육·해·공군 51개 병과)·의무병과 ⇒ (변경)모든 병과로 확대

2) 과도한 응시자격 박탈 내용 완화(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응시결격 사유인 중징계(해임·파면) 받은 자 외 다른 중징계(정직·강등) 받은 자도 응시자격 박탈하는 내용 삭제

3) 처벌에 따른 감점제도 일부 삭제 및 추가(별표4. 서류전형 배점표)

- 불필요한 감점 사항(불기소(공소권 없음) 1점, 처벌 사유가 파렴치 행위인 경우 5점) 삭제

- 중징계(정작강등) 및 경징계 처벌사항에 따른 감점 규정 추가

다. 관련 제도 개선

1) 동점자 처리기준 객관적으로 재정립

- (기존)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연장자 순 ⇒ (개정) 법령시험 다득점자, 다수 응시자, 연장자 순

2) 중점관리대상업체 임명 조건 조정 가능사항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추천계급 추가

- (기존) 추천 직급 ⇒ (개정) 추천 계급·임명 직급

3) 관련분야 학위 취득 기준 범위 확대

- 안보·군사·북한 등 비상대비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까지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 인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뻥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예규 제 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7호 중“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을“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장 제3절”로, “대통령 훈령 제344호”를 “대통령 훈령 제400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본병과 출신으로” 와 “기본병과”,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이상 근무한 자”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본병과 출신으로” 와 “기본병과”,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이상 근무한 자”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본병과 출신으로” 와 “기본병과”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전문경력과 나군”을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로, “기본병과 출신으로” 와 “기본병과”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기본병과 출신으로” 와 “기본병과”,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이상 근무한 자”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기본병과 출신으로” 와 “기본병과”,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이상 근무한 자”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를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이사관(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로 변경하고, “기본병과 출신으로” 와 “기본병과”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전문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문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을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무부처를”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을”으로 한다.

제1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의2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 중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5항, 제7항 중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표>“전문경력관 나군”을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 중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연장자 순”을 “법령시험 다득점자, 다수 응시자, 연장자 순” 으로 한다.

제38조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도서식”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40조 중 “2019년7월1일”을 “2023년1월1일” 로 한다.

[별표1]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제11조)

※위 기관은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함 “(비상대비자원관리법 12조의2)”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2조의2)” 로, “추천직급”은 “추천계급·임명직급”으로 한다.

[별표1] 2. 중점관리지정업체

“- 추천 계급·임명 직급은 전시 중요도, 기관 규모, 정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를 추가한다.

※“소령급 이하 추천계급 기준 : 대령·중령급 추천 이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지정업체

[별표4]를 “[별표2]”로 변경하고, 1. 선발직위별 배점표 가,나항의 구분(교육) 중 1항,2항,3항의 대학원을 삭제하고, 다항의 “전문경력과 나군·지방전문경력과 나군, 업체 소령·대위”를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지방전문경력과 나군 이하, 업체 소령·대위” 로 한다.

[별표2] 중 1. 선발직위별 배점표 가,나,다항의 처벌(감점) 중 “① 중징계 받은자는 응시자격 박탈, ② 불기소(공소권없음), 징계유예 및 징계를 받은 자 중 지휘책임에 의한 처벌은 1점, ③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의 경우 2점, ④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기타 처벌 등의 경우 3점, ⑤ 처벌의 사유가 파렴치 행위(성군기 위반, 횡령 등)인 경우 5점, ⑥ ①~⑤에 포함되지 않는 처벌사항 및 처벌사항이 기록 유지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의 사유 및 경중을 고려하여 감점을 정할 수 있음”을 “①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에서 제외한다, ② 중징계(정직·강등) 3점 감점, ③ 경징계(감봉) 2점 감점, ④ 경징계(견책근신) 1점 감점, ⑤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기타 처벌 등 3점, ⑥ 기소유예 2점 감점

※ ①~⑥에 포함되지 않는 처벌사항 및 처벌사항이 기록 유지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의 사유 및 경중을 고려하여 감점을 정할 수 있음(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또한, 징계처벌과 기소유예 등 기타처벌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보다 더 중한 감점사유만 적용한다.” 로 한다.

[별표2] 중 3. 군복무경력 등급별 배점기준 중 [복무경력 산출 및 배점적용]의 “단, 1개월은 30일로 한다.” 를 삭제하고 “복무경력은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만 인정한다.”로 한다.

[별표2] 중 “4. 대학원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기준 ” 중 “대학원”을 삭제한다.

[별표2] 중 4. 나 “학위증명서에 안보, 북한, 군사, 통일, 위기관리, 재난, 안

전, 방재, 소방 등의 관련분야 학과명 또는 전공명 등이 명시되어 서류전형위원이 관련분야 학위로 인정한 경우로 한다.”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상기 관련 분야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 학위 이상 취득했다고 서류전형위원이 관련분야 학위로 인정한 경우.” 로 한다.

[별표2] 중 6. 관련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및 기준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를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1,2,3급)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가산점은 동일함” 으로 한다.

[별지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뢰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근거)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3.~6. (생 략) 7.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제1항 (대통령훈령 제344호)	제2조(근거) 1.「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2.「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3.~6. (현행과 같음) 7. ---------- 제3장 ----- (---------- 제400호)
제4조(응시자격) ① (생 략) 1.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2.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3.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4.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 5.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6.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제4조(응시자격) ①(현행과 같음) 1.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2.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3.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4. ------- 이하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 ---- 5.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6.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7.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 8. (생 략) 9.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및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10.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본병과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2. 1.> 1. 육군의 의정병과 2. 해군의 의무과 중 의정특기 3. 공군의 의무과 중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일한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7. ----------, 이사관(임기제) ------- --- ~~기본병과 출신으로~~ ---- ~~기본병과~~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9.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근무기한) ① (생 략) ② ----------인정한다. 이 경우 기관·업체는 주무부처를 거쳐 ----------	제5조(근무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원관리주관기관을 ----------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 해제 등)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 해제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15조(지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15조(지도)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16조(적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기준 등) 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16조(적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기준 등) 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22조(임용추천 심의 및 추천) ① ~ ④ (생 략) ⑤ -----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상자를 주무부장관을 ----------. ⑥ (생 략) ⑦ 주무부장관은---------- ---------- ⑧ (생 략)	제22조(임용추천 심의 및 추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⑥ (현행과 같음) ⑦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① (생 략) ② (생 략) <표> 전문경력관 나군	제2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표> -------- 이하
제26조(시험과목) ① (생 략) ② (생 략) 1. [과목1]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관계법령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포함) 나. ~ 라. (생 략) 2. (생 략)	제26조(시험과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30조(동점자 처리기준) ---- 다수 응시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0조(동점자 처리기준) ---- 법령시험 다득점자, 다수 응시자, 연장자 순---- ----------
제38조(개인정보공개 동의)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며, --------	제38조(개인정보공개 동의) ----- 별도 서식 ----------, --------
제39조(확인·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① (생 략) ② 주무부장관은---------- ③ ---------- 주무부장관의 확인·점검 결과를 ---------- ④ (생 략)	제39조(확인·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③ ----------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	제40조(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
[별표 1]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제11조) ※ 위 기관은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함(비상대비자원관리법 12조의2) 다만, 추천직급은 전시 중요도, 기관 규모, 정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2. 중점관리지정업체	[별표 1] 1. (현행과 같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추천 계급·임명 직급--- ----------. 2. (현행과 같음) - 추천 계급·임명 직급은 전시 중요도, 기관 규모, 정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 소령급 이하 추천계급 기준 : 대령·중령급 추천 이외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지정업체	※ ----------
[별표 4] 1. 선발 직위별 배점표 가. (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서기관·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업체 대령·중령	[별표 2]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구분	주 요 경 력	총점	배점
교육	① 대학원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② 대학원 관련분야 외 석사학위 취득 ③ 대학원 석사학위 미 취득	2.0	2.0 1.5 1.0

구분	주 요 경 력	총점	배점
교육	① ~~대학원~~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② ~~대학원~~ 관련분야 외 석사학위 취득 ③ ~~대학원~~ 석사학위 미 취득	2.0	2.0 1.5 1.0

나. 전문경력관 가군·지방전문경력관 가군

구분	주 요 경 력	총점	배점
교육	① 대학원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② 대학원 관련분야 외 석사학위 취득 ③ 대학원 석사학위 미 취득	2.0	2.0 1.5 1.0

구분	주 요 경 력	총점	배점
교육	① ~~대학원~~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② ~~대학원~~ 관련분야 외 석사학위 취득 ③ ~~대학원~~ 석사학위 미 취득	2.0	2.0 1.5 1.0

다. 전문경력관 나군·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업체 소령·대위

구분	주 요 경 력
처벌 (감점)	① 중징계 받은 자는 응시자격 박탈 ② 불기소(공소권없음), 징계유예 및 징계를 받은 자 중 지휘책임에 의한 처벌은 1점 ③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의 경우 2점 ④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기타 처벌 등의 경우 3점 ⑤ 처벌의 사유가 파렴치 행위(성군기 위반, 횡령 등)인 경우 5점 ⑥ ①~⑤에 포함되지 않는 처벌사항 및 처벌사항이 기록 유지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의 사유 및 경중을 고려하여 감점을 정할 수 있음

다. -------- 이하·-------- 이하, -------

구분	주 요 경 력
처벌 (감점)	①「군인사법」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에서 제외한다 ② 중징계(정직·강등) 3점 감점 ③ 경징계(감봉) 2점 감점 ④ 경징계(견책·근신) 1점 감점 ⑤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기타 처벌 등 3점 ⑥ 기소유예 2점 감점 ※ ①~⑥에 포함되지 않는 처벌사항 및 처벌사항이 기록 유지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의 사유 및 경중을 고려하여 감점을 정할 수 있음(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또한, 징계처벌과 기소유예 등 기타처벌이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보다 더 중한 감점사유만 적용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군 복무 경력 등급별 배점 기준 【배점 기준표】(생 략) 【복무경력 산출 및 배점 적용】 가. 복무경력은 전역일(현역일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서 임관일을 뺀 기간을 산출하여 응시자의 시험 응시 해당 계급의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단, 1개월은 30일로 한다. 나. (생 략)	3. (현행과 같음) 【배점 기준표】(현행과 같음) 【복무경력 산출 및 배점 적용】 가. ---------- . ~~단, 1개월은 30일로 한다.~~ (복무경력은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만 인정한다) 나. (현행과 같음)
4. 대학원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 기준 가. (생 략) 나. 학위증명서에 안보, 북한, 군사, 통일, 위기관리, 재난, 안전, 방재, 소방 등의 관련분야 학과명 또는 전공명 등이 명시되어 서류전형 위원이 관련분야 학위로 인정한 경우로 한다.	4. ~~대학원~~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상기 관련분야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 학위 이상 취득했다고 서류전형 위원이 관련분야 학위로 인정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관련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및 기준 【인정범위】 <table><tr><th>관련법령</th><th>자 격 증</th></tr><tr><td>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td><td>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td></tr></table>	6. (현행과 같음) 【인정범위】 <table><tr><th>관련법령</th><th>자 격 증</th></tr><tr><td>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td><td>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1,2,3급) *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가산점은 동일함</td></tr></table>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생 략)----------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연 락 처	(044) 205 - 4337